

창업기업 지원 펀드 확보

전북도, 모태펀드 90억원 등 총 150억 규모로... 지역 소재 창업기업 등에 투자

전북도는 도내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에서 주관한 한국 모태펀드 2018년 추가 출자 공모사업에 '에스제이 퍼스트벤처펀드'가 최종 선정되어 한국 모태펀드 90억원 등 총 150억 규모로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어 결정되는 '퍼스트벤처펀드'는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전체 결성액 150억원의 40%인 60억

원을 전북도 소재 창업기업 등에 투자한다.

'퍼스트벤처펀드'는 모태펀드 90억원을 포함해 전라북도 30억원, 민간 및 운용사 30억원 등 최소 15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며, SJ투자파트너스에서 8년간 운용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018년 8월 한국모태펀드 추가 출자사업을 통해 5천 32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 14개사를 선정하였고, 전북도와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운용사)는 창업초기 일반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2월까지 펀드를 결

성할 예정이다.

도는 2015년부터 3개 펀드(효성창조경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전북·효성 탄소성장펀드)에 505억원을 조성하여 도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주고 있다.

도 유근주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퍼스트벤처펀드'를 적극 활용해 적기에 투자자금을 확보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해양정화활동 나선 해양영토대장정 대원들

제10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에 참가한 대원들이 9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봉수대해수욕장에서 해양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전주시, 8월 주민세 53억 고지·성실 납부 기대

전주시는 8월 1일 기준 전주시세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주, 법인 등에 부과하는 정기분 주민세 27만8000건(53억원)을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

개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세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거나,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도의회 재량사업비 부활 반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부활을 반대했다.

이들은 9일 성명을 통해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썩지 않는 돈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 10대 의회 중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결국 검찰 수사와 구속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시민들에게 공개 선언했지만 제11대 전북도의회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일자리창출·서민지원 지방세 2조4000억 감면

행안부, 오늘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의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2조4000억원의 지방세 감면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예고기간을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경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돼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시

취득·재산세 각각 50% 감면

신혼부부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설 등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은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청년범위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도 각각 3년씩 연장된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가 감면된다. 시

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개인택시 운송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종업원보·재산분 주민세 100%를 감면해준다.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50%)과 재산세(25%), 법인 등기시 등록면허세(50%) 등 감면 혜택이 3년 늘어난다.

▲저출산 극복,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다. 2019년 한시 적용된다. 대상은 혼인 3개월 전~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의 부부다.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60㎡ 이하) 최초 구입 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별 기준으로 판단,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세대원(세대를 분리한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또는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와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과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받는다. 다만 7인승 미만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최소납부)로 적용된다.

저출산 대책 지원 등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1~3%로 인하한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다.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한다. 공공·민간(장단기) 등록 임대주택 감면을 3년간 일괄 연장한다. 단, 목적세(지역지원시설세)는 종료한다.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전 가구당 40㎡ 이하) 재

산세(100%) 감면 신설과 소형임대주택(40㎡ 이하)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19세 이하)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 과세를 제외했다.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과세 제외 대상이다.

소형 서민주택 취득세(100%)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자동차세 각각 100%) 감면, 승용 경형자동차(취득세 100%)에 대한 감면도 3년 연장된다.

▲납세편의 제고, 과세체계 합리화

정부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고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개선한다.

사치성재산(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대도시 내 초과 등 취득세 종과 대상 전환시 신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금지시켜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했다.

녹색인증 건축물 등 신축·증축시 인증 서류 보완 등으로 인증이 지연되더라도 사유적으로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취득 당시에 인증 완료한 경우만 감면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녹색인증 건축물은 취득일로부터 70일 이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 인증만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중 연체금리(연 6~8%)를 감안해 지연이자 성격의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5%)와 가산금(월 0.75%)을 인하했다. 주거용·비주거용 집합건축물의 지역지원시설세 계산방식을 '호별'로 통일해 세 부담이 동일하도록 했고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납세의무성립일)을 '8월1일'에서 '7월1일'로 변경했다.

일반등기 우편료(1930원) 등 고지서 발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2000원 미만인 지방세의수입금 납부액에 대해선 고지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